

CONTENTS



01 가정폭력 사례관리	03
02 성폭력 사례관리	13
03 아동학대 사례관리	23
04 노인학대 사례관리	31
05 자살 및 유가족 사례관리	39
06 보호관찰 및 출소자 사례관리	51

협력기관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중부경찰서

 대전YWCA가정폭력상담소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Chapter

01

가정폭력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Hand Book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협박, 신체적 억압, 자유구속 등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정서적 폭력	폭언(욕설), 무시, 모욕, 원가족비난, 간섭과 의심, 물건파손, 일거수 일투족 감시, 외부관계 단절, 애완동물 학대하기 등 정서적으로 가해지는 폭력
성적 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부부강간),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및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생활비 주지 않기, 동의없이 재산처분, 가계부 지출 일일이 보고하게 하기 등의 경제 활동 통제 및 경제적방임으로 금전적으로 일상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가정폭력의 특성

- ▶ 은폐되는 폭력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경향이 있음
- ▶ 반복되는 폭력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남
- ▶ 순환되는 폭력 세대간 전이(대물림)를 통해 나타남
- ▶ 중복되는 폭력 배우자, 자녀, 부모폭력 등 학습을 통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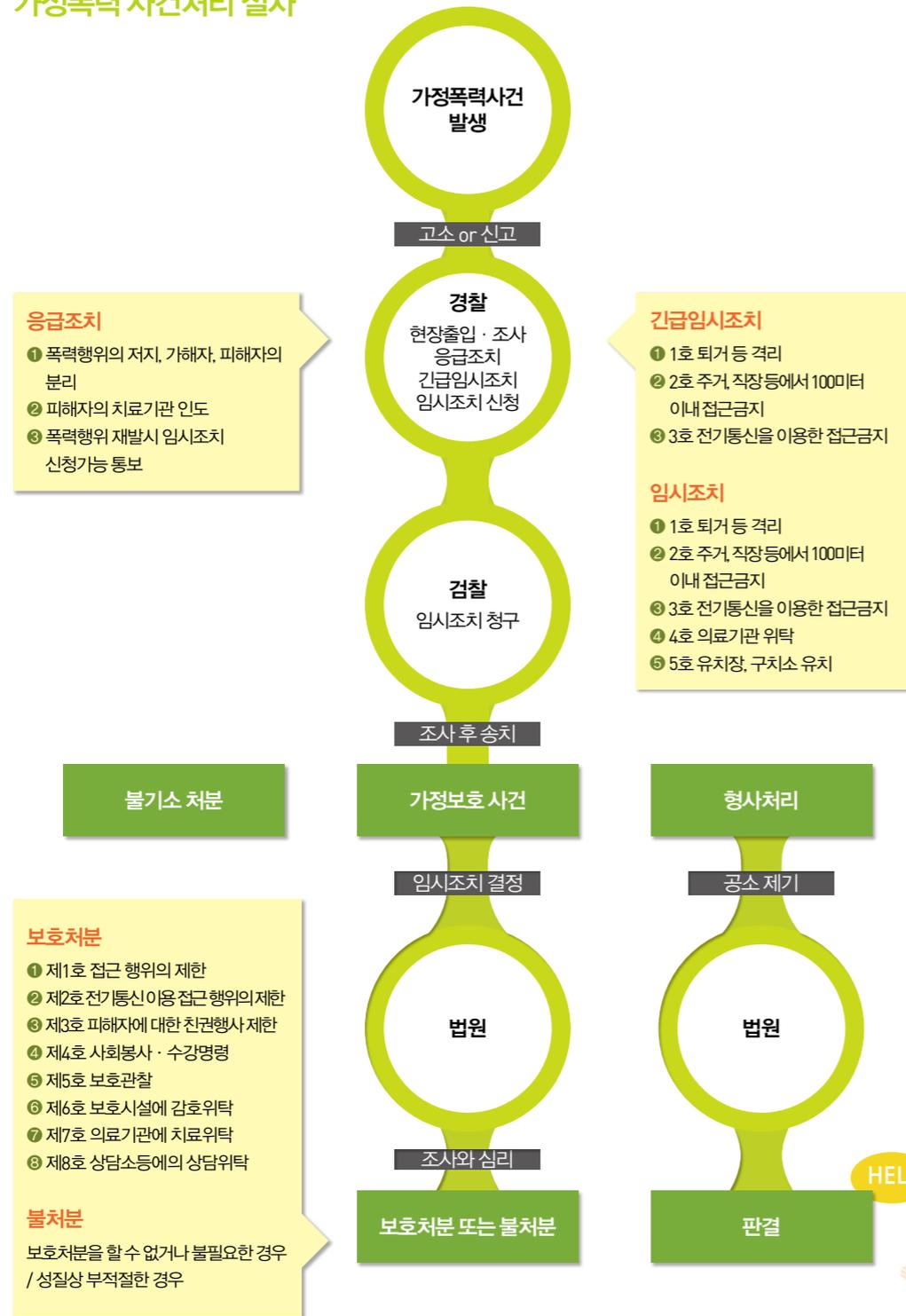
가정폭력 피해자 특성

독립심 결여	가해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의존, 사회적으로 독립하는데 두려움, 자기자신 비하, 자원결핍 등으로 독립심이 결여됨
자존감 저하 및 희생자화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과도한 흥분이나 감정절제에 미숙하여 폭력사실을 숨기거나 가해자를 두둔함
공포의 재경험	가해자를 연상할수 있는 대상, 공간에 공포를 느낌
우울증	자살생각, 즐거움 등을 상실하여 우울증에 시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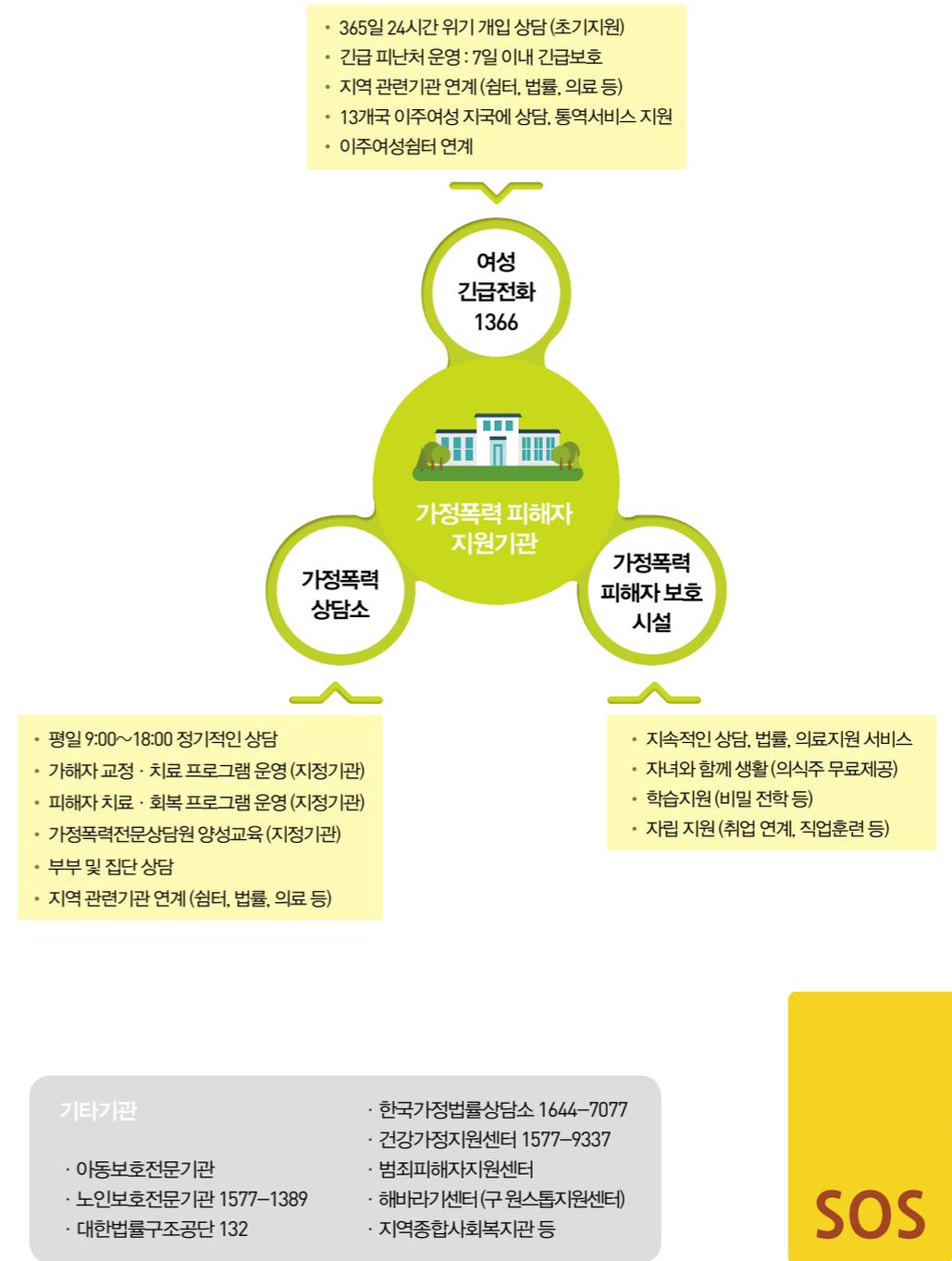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방법**

- 1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하도록 알려주기
- 2 긴급한 피신에 대비해 비상금을 준비하도록 알려주기
- 3 위급시 도움을 받을 안전한 장소나 연락할 사람을 정해놓도록 알려주기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



가정폭력 지원체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구분	지원 내용
보호시설 입소지원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만18세 미만 자녀와 동반입소가 가능 보호시설은 긴급피난처(최대7일 이내)와 단기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이 있음
의료비 지원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함 (단, 피해발생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필요)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가정폭력피해자의 동반가족이 아동일 경우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취학 가능
주민등록 열람제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함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의 민사 및 가사, 형사사건 등 무료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132)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지원
주거지원	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2년동안 (2년 연장 가능) 임대주택 지원
긴급복지지원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등을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이혼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 면접 교섭권 제한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 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음



양육비이행지원제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양육비이행지원 분야

- 양육비이행 서비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3월 24일 제정)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를 이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된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6개월(최대 9개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양육비관련 상담

- 온라인상담 : 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 1644-6621
- 내방상담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정폭력 Q & A

Q 가정폭력을 목격한 주변인이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익명성과 신분보호가 철저히 보장이 되나요?

A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제4조 4항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거나 대인관계 회피, 부쩍 줄어든 말수, 외관상 드러난 상처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중력 저하, 잦은 실수, 자살이나 살인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갑작스런 두통, 식욕저하가 있기도 합니다.

Q 가족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꺼려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정보호사건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잘 활용하면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상담위탁처분, 수감명령처분 등과 같이 상담이나 교육, 보호관찰 등을 통해 폭력의 재발을 막고 건강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회복을 돕게 되므로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합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7일 이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긴급피난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동반하여 장기간 머물기를 원한다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을 통해 최장 4년 이내 주거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A씨가 남편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문을 두드리자, 신고자와 그의 남편은 아무일도 아니라며 돌아가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출입을 거부하여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 「현장출입 및 조사권」이 있음을 고지 후 주거 또는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 · 피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출입을 거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철회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철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고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진입한 후 가해자가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항의하더라도 가정폭력사건은 위법행위임을 고지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행위자 통보서를 시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

Q 결혼생활 20년째인 B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몇 달 전부터 별거중인데 남편이 수시로 협박문자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통에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의 경우, 남편의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고, 접근금지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런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55조의3)

-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④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

필요한 서류로는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타 소명자료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이며,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전지역 가정폭력 관련기관

구분	시설명	주소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중구 선화로 81번길 26-5, 2층 (선화동)	042-1366 042-222-7042
가정폭력 전담경찰 (여성청소년과)	· 대전중부경찰서	중구 중앙로 112 (대흥동)	042-220-7348
	· 대전동부경찰서	대덕구 계족로 670 (법2동)	042-600-2648
	· 대전서부경찰서	서구 복수서로 47 (복수동)	042-600-3648
	· 대전대덕경찰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 (문평동)	042-600-4848
	· 대전둔산경찰서	서구 한밭대로 733 (둔산동)	042-600-5648
	· 대전유성경찰서	유성구 복유성대로 112 (지족동)	042-725-6449
	상담소	·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덕구 한남로 150번길 16 (모정동)
· 대전YWCA가정폭력상담소		중구 대흥로 128 (대흥동)	042-254-3038
·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동구 계족로 368번길 81 (성남동)	042-625-5441
이주여성 긴급전화	· 대전다누리콜센터	서구 월평북로 91, 5층 (월평동)	1577-1366 042-488-2979



Chapter

02



성폭력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Hand Book

성폭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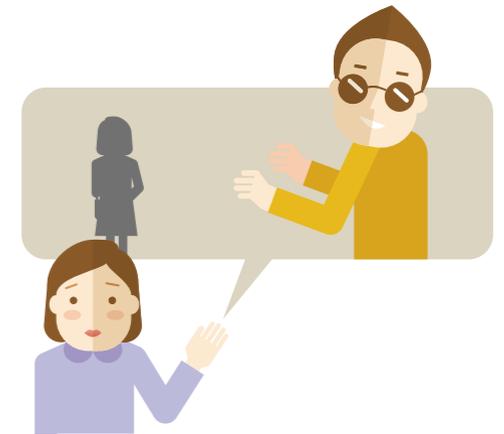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수반되는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육체적·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행위 유형

현행법은 성폭력행위 유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지만 통설과 판례에 따라 의미를 정리합니다.

성폭력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수반하는 폭력행위로서 육체적·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
성폭력 범죄	성폭력 중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 행위
강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폭행과 협박을 수반)으로 성적 교섭을 하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강제성추행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는 비자발적 성적 접촉이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간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한 성교행위
음란행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음란행위를 형사 처벌함)
성적 자기결정권	타인의 인권과 사회의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적 언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받지 아니할 권리(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폭력의 2차 피해	성폭력 사건 발생이후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언론 등에 의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되는 또다른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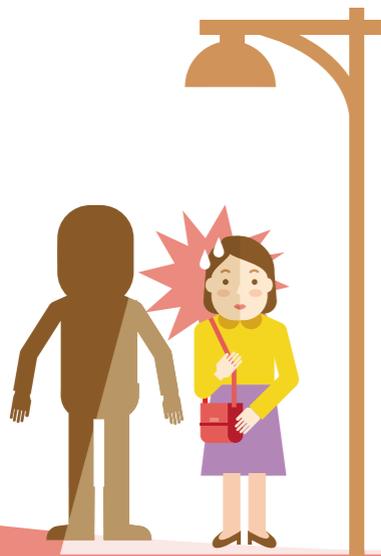


✓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 ① 피해자 상담 연계지원 → 성폭력피해지원 상담소
- ② 국선변호사 선임 안내 → 전담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
- ③ 피해자 진술의 영상물에 의한 촬영·보존: 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보존함.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④ 수사기관, 법원에서 피해자를 조사/증인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음

성폭력 피해의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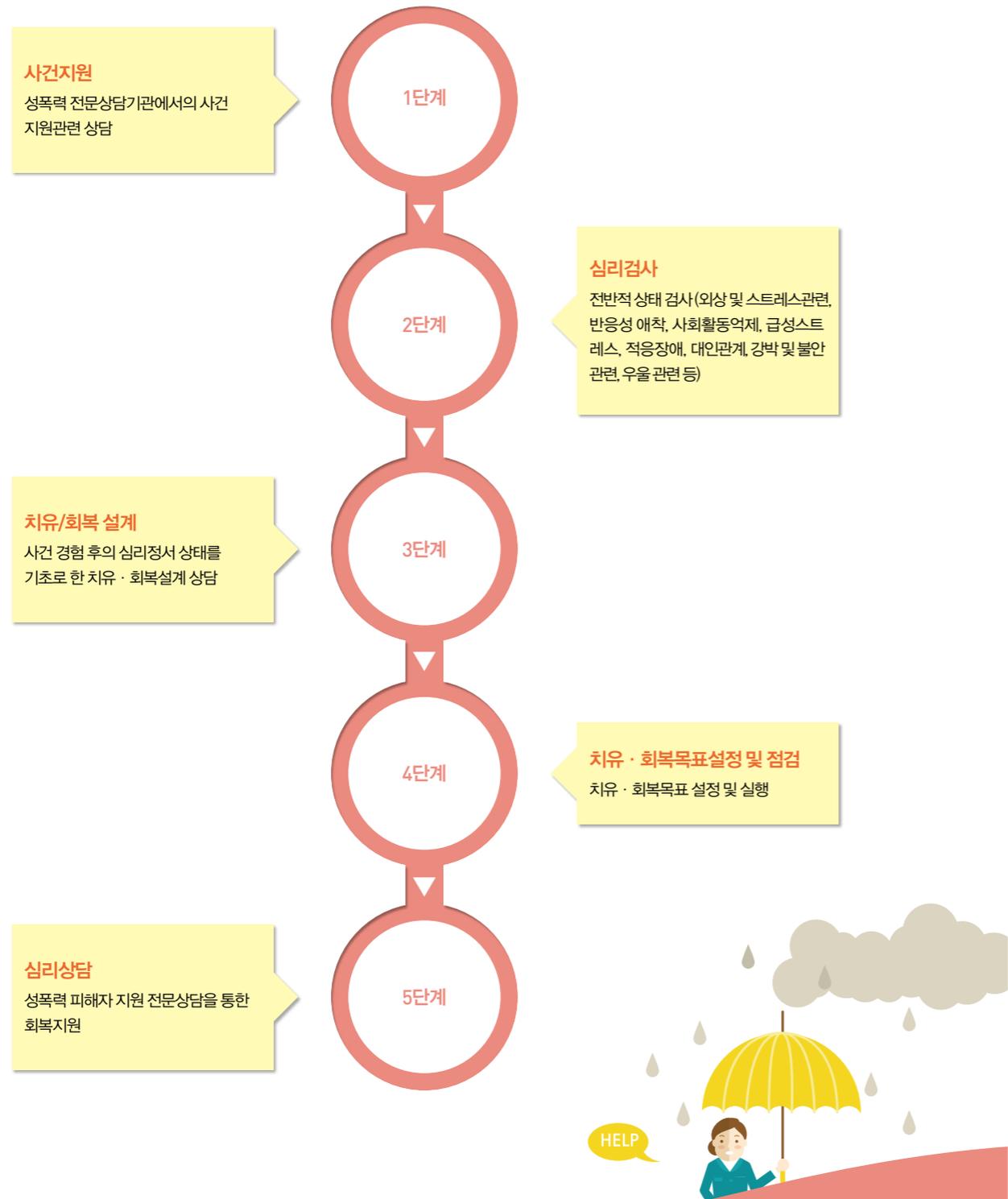
성폭력 피해 징후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증상으로 특정화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당사자가 스스로 성폭력 피해를 호소(말하는 것)한다면, 피해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넘어 그 자체가 성폭력 피해 징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처리절차



성폭력 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선택순환적 5단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 ▶ 성폭력 피해관련 의료적(산부인과, 외과, 신경정신과 등) 지원
- ▶ 성폭력 피해관련 법적지원
- ▶ 성폭력 피해자 위기상담지원
- ▶ 성폭력 피해관련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 지원 (먼저 판단하기 보다는 상담소에 직접 문의를 권합니다.)
- ▶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

✓ **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 1 성폭력피해자 치유, 회복지원
- 2 피해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지원
- 3 성폭력 사건 후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증상 완화 및 예방
- 4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조모임 운영
- 5 여성폭력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권지원

✓ **성폭력 기관별 지원사업**

· 성폭력상담소

상담지원	개인심리상담, 집단 및 가족 심리상담
의료적지원	의료비지원, 의료기관 연계
법률지원	① 수사, 재판지원 ② 신뢰관계에 있는사람과 동석 (사법절차 과정 속 피해자 인권 보호) ③ 법정모니터링, 법률적 정보 제공 ④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행 (공익변호사 선임지원)

· 해바라기센터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

- 의료적 처치 우선 지원
- 성폭력전담 경찰관 배치
- 피해자 조사 후 관할 경찰서/성폭력특별수사대로 사건 접수

· 쉼터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 피해자 연계 필요 시 전문상담소에 직접 문의

성폭력 Q&A



Q 사례관리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초기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A 사례관리자가 가장 최초로 피해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 한 후 수사기관이나 전문상담소에 문의하세요. 문의할 때는 인지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말로 하는 전달은 상호간 이해차이가 있어 법적인 절차 안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더 들어 보려 하거나, 내 생각을 제안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피해사실 신고의무 관련 법령 및 대상

- 피해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직업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해당법률에서는 공통적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는 신고의무대상자입니다
- 신고는 사법기관 (대표 112)에 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자원서비스가 있나요?

A 성매매는 사는 자와 파는 이 양쪽 모두 법적인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습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는 통상 교육명령을 통해 계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성매매'의 정의와 '성매매피해자'정의를 충족하는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은 성을 파는 행위로부터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지원 기관

구분	시설명	연락처	역할
성매매피해상담소	느티나무	042-254-3534	상담, 의료, 법률
성매매피해자활센터	너른마당	042-254-3532	자활, 교육, 그룹홈지원
성매매피해 여성쉼터	정다운 집	비공개	생활시설
성매매피해 청소년쉼터	청소년 쉼자리	비공개	생활시설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미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미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미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Q 성폭력 피해신고 또는 의뢰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신고와 고소는 다릅니다. 현행법은 피해사실을 아는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성폭력 사건발생 시 신고 방법(기관별)에 따라 조치되지만, 피해당사자의 진술이 없으면 모든 신고사건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습니다. 상담소에 의뢰되면 피해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 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성폭력피해사건은 피해시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유형, 피해정도가 다르므로 상담소의 개입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고, 피해당사자의 의지가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병원기록, 사진, 녹음파일, 목격자 등)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발생사건이 아니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당사자의 의지가 불확실할 때는 상담소에 자문을 구한 후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직접 들었거나, 발견했을 경우 가장 먼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접근우려가 있는가?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가?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의 인적자원은 누구인가? 정도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례관리하기 전의 공적인 개입여부와 정도,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참고하세요.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한 제반사항 외에는 피해자가 먼저 말하기 전에 사례관리사가 피해와 관련한 질문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자문을 구한 후 대응하세요.

대전지역 성폭력 관련기관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긴급전화	·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중구 선화로 81번길 26-5 2층 (선화동)	1366 (042-1366)	
성폭력 전담 경찰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	·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서구 둔산중로 777 (둔산동)	042-609-2945	
	· 대전중부경찰서	대덕구 계족로 670 (법2동)	042-600-2384	
	· 대전동부경찰서	서구 복수서로 47 (복수동)	042-600-3359	
	· 대전서부경찰서	중구 중앙로 112 (대흥동)	042-220-7394	
	· 대전대덕경찰서	서구 한밭대로 733 (둔산동)	042-476-0118	
	· 대전둔산경찰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 (문평동)	042-600-4588	
	· 대전유성경찰서	북유성대로 112 (지족동)	042-725-6383	
대전해바라기 센터	· 대전해바라기센터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436	
성폭력 상담소	비 장 애 인	· 대전 성폭력상담소	중구 오류로 98 (오류동)	042-712-1369
		·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중구 대흥로 128 (대흥동)	042-254-3038
	장 애 인	· 대전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서구 월평서로 9, 월평빌딩3층 (월평동)	042-223-8866
		· 동대전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가양2동)	042-637-1366
성폭력 센터	· 나는 봄 (친족성폭력피해자) · 해외랑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센터)	비공개	피해자연계 시 직접문의	

Chapter

03



아동학대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Hand Book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은 만18세 미만의 자)

아동학대 유형별 대표적 행위 및 예측징후

유형	대표적 행위	예측징후
신체적 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및 가혹행위 ex) 때리기, 흔들기, 화상 입히기 등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ex) 소리지르기, 욕설, 집 밖으로 내쫓기, 가정폭력노출 행위 등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양육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모든 성적 행위 ex) 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성적 노출	· 아동의 성병감염, 생식기 상처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및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방임	·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하는 행위 ex)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적인 보호와 같은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행위 등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잦은 결석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방안

- ▶ 학대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징후 확보 (상흔, 증언 등)
- ▶ 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신병확보 (선조치 후 신고)
- ▶ 국번없이 112에 신고
- ▶ 현장 출동한 경찰 및 상담원에게 구체적인 상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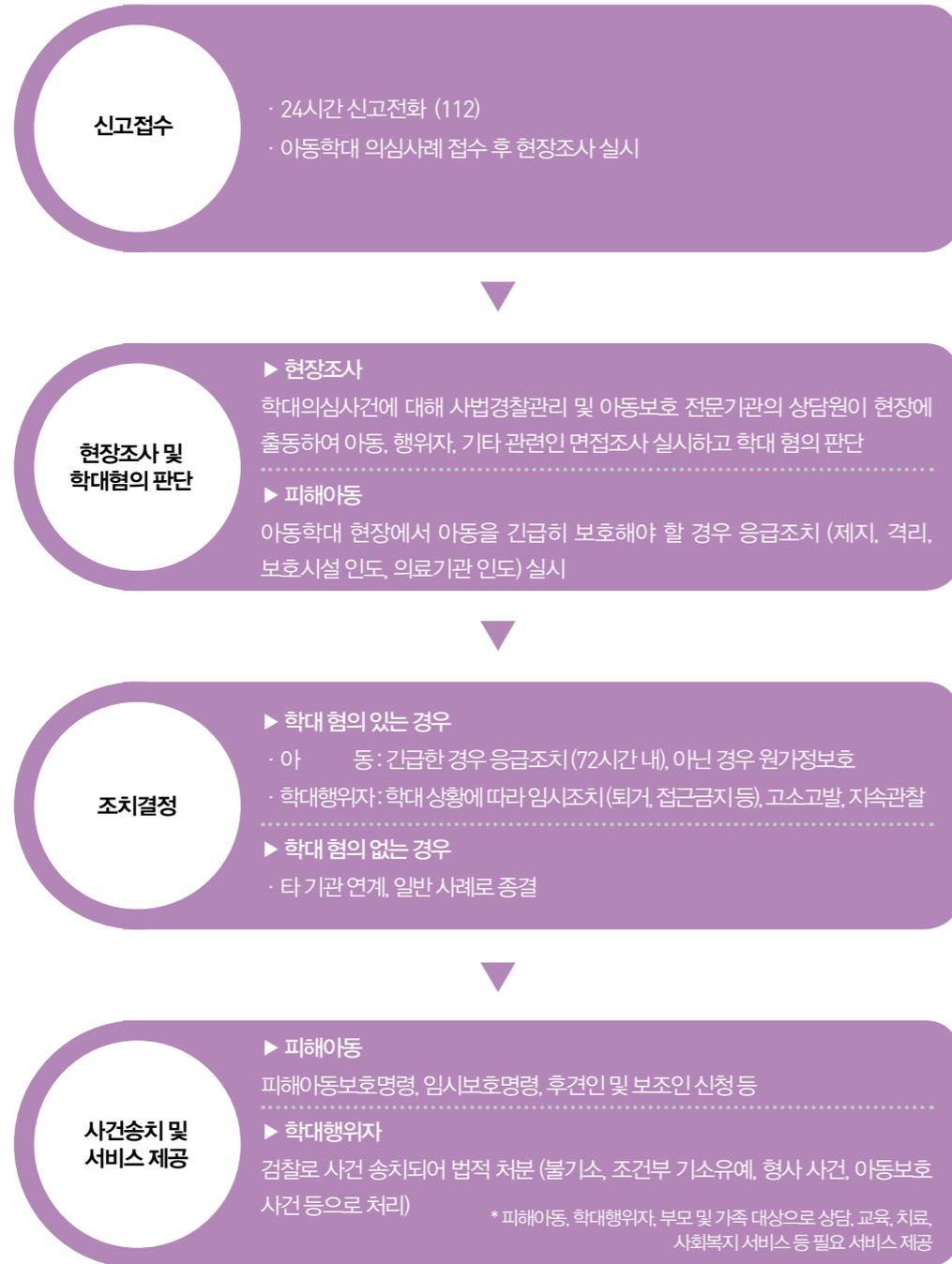
✓ 아동과 면담 시 유의사항

- 1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질문은 간단하게 함
 - 2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성인이 임의로 추측한 내용을 아동에게 질문할 경우 유도질문이 되거나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음
 - 3 성인이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동은 자신이 혼이 날까 봐 학대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할 수 있음
 - 4 아동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함
 - 5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직접 아동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협조
- ※ 아동에게 아동학대가 너의 잘못이 아니며, 이러한 감정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함

아동학대 처벌기준

유형	처벌기준
신체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처리절차



✓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 1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 확보 (얼굴이 나오도록)
- 2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함
- 3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하지 않음
- 4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음
(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으며,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불채택)

아동학대 지원서비스

서비스	지원내용
수사지원	응급조치, 경찰·검찰·법원 진술 시 진술조력 및 신뢰관계인 동석, 고발 및 수사의뢰,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상담내용 지원, 법적 절차 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지원	경제적 지원, 지역자원 연결 등
상담 및 치료지원	아동 및 행위자 심리검사, 심리치료, 각종 프로그램 지원 등
보호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 보호시설 입소 지원 등
모니터링 및 연계	재학대 발생여부 모니터링 및 지역자원 연계 등

✓ 분리보호의 유형 (만 18세 미만까지 보호 가능)

- 1 친족 보호
- 2 가정위탁 : 대전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가정위탁 보호
- 3 그룹 홈 : 학대피해아동전담보호시설 포함 18개 그룹홈 보호
- 4 양육시설 : 대전 관내 12개 양육시설 보호

아동학대 Q&A

Q 아동학대 유형중 '방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아동이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인 경우, 예방접종 및 치료 불이행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한 경우, 아동에게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잦은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방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무조건 분리보호가 되나요?

A 가정 내 발생하는 일화성이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하여 아동과의 관계를 회복, 원가정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분리 보호 시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진행합니다.

Q 아동학대로 분리 보호된 아동은 보호자의 신청이 있으면 바로 원가정으로 복귀하나요?

A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며 가정방문 및 조사를 통해 재학대 위험여부를 판단한 이후 가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원가정 복귀 시기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을 상실할 수 있나요?

A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친권상실청구)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상실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학대 상황을 알게 된 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 되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03

Q 아동학대 지원서비스 수혜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

A 아동학대로 사례개입을 진행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이 부모와의 분리를 거부할 때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복지법 15조 (보호조치)에 의하면 아동을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아동이 분리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분리하여 보호하지 않고,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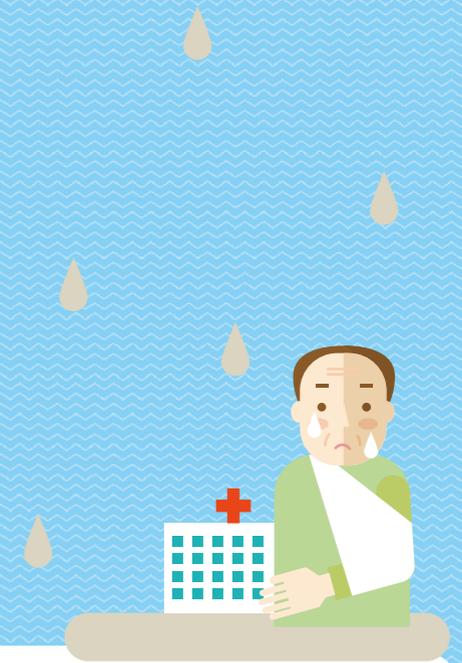
대전지역 아동학대 관련기관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신고전화	· 아동학대신고	-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 전담 경찰 (여성청소년과)	· 대전지방경찰청	서구 둔산중로 77(둔산동)	042-609-2548
	· 대전중부경찰서	중구 중앙로 112(대흥동)	042-220-7538
	· 대전동부경찰서	대덕구 계족로 670(법2동)	042-220-2648
	· 대전서부경찰서	서구 복수서로 47(복수동)	042-600-3748
	· 대전대덕경찰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문평동)	042-600-4848
	· 대전둔산경찰서	서구 한밭대로 733(둔산동)	042-600-5648
	· 대전유성경찰서	유성구 복유성대로 112(지족동)	042-725-6349
아동보호 전문기관	·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어덕마을로 156(중촌동)	042-254-6790
해바라기센터 (아동성폭력)	· 대전해바라기센터	중구 문화로 282(대사동)	042-280-8436
법률지원	· 법률홍닥터	중구 보문로 246(대흥동)	042-226-3711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서구 둔산북로 121(둔산동)	042-472-9061



Chapter

04



노인학대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Hand Book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유형별 대표적 행위 및 예측징후

유형	대표적 행위	예측징후
신체적 학대	· 감금, 신체구속, 폭행 등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등 단절 ·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임 · 원치 않는 일(노동) 강요	· 상처 및 부상, 영양부족 상태, 탈수 상태 등 · 의심이 갈 정도의 급격한 체중감소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 쳐다보지 않고 무시, 대화하지 않음 · 사회활동, 연락 등 방해 · 위협, 헐박, 고함, 욕설 등 ·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킴	·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이나 우는 모습 · 가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학대	· 강제적인 성관계, 원치 않는 스킨십 · 신체를 빚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개방된 곳에서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웃 또는 기저귀를 교체(목욕)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성기 주변의 타박상이나 하혈 · 분노 또는 수치심,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 임금, 연금, 재산, 주식, 공적부족 급여 등 임의 사용 · 노동에 대한 대가 미지급 · 신용 도용 및 대리권 악용 · 부양 전제의 재산상속 약속 및 증여 후 부양의무 미이행	· 노인에게 강요하거나 허락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함 · 재산 증여 후 부양하지 않음 ·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방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 방치 ·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처치하지 않음	· 신변처리가 안된 불결한 상태로 방치 · 노인의 주변 환경이 건강이나 안전으로부터 방치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유형	대표적 행위	예측징후
유기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왕래 두절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 이행 거부	·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데 유기 · 가족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두절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자기방임	·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 거부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명을 위협받음	· 노인 스스로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 · 자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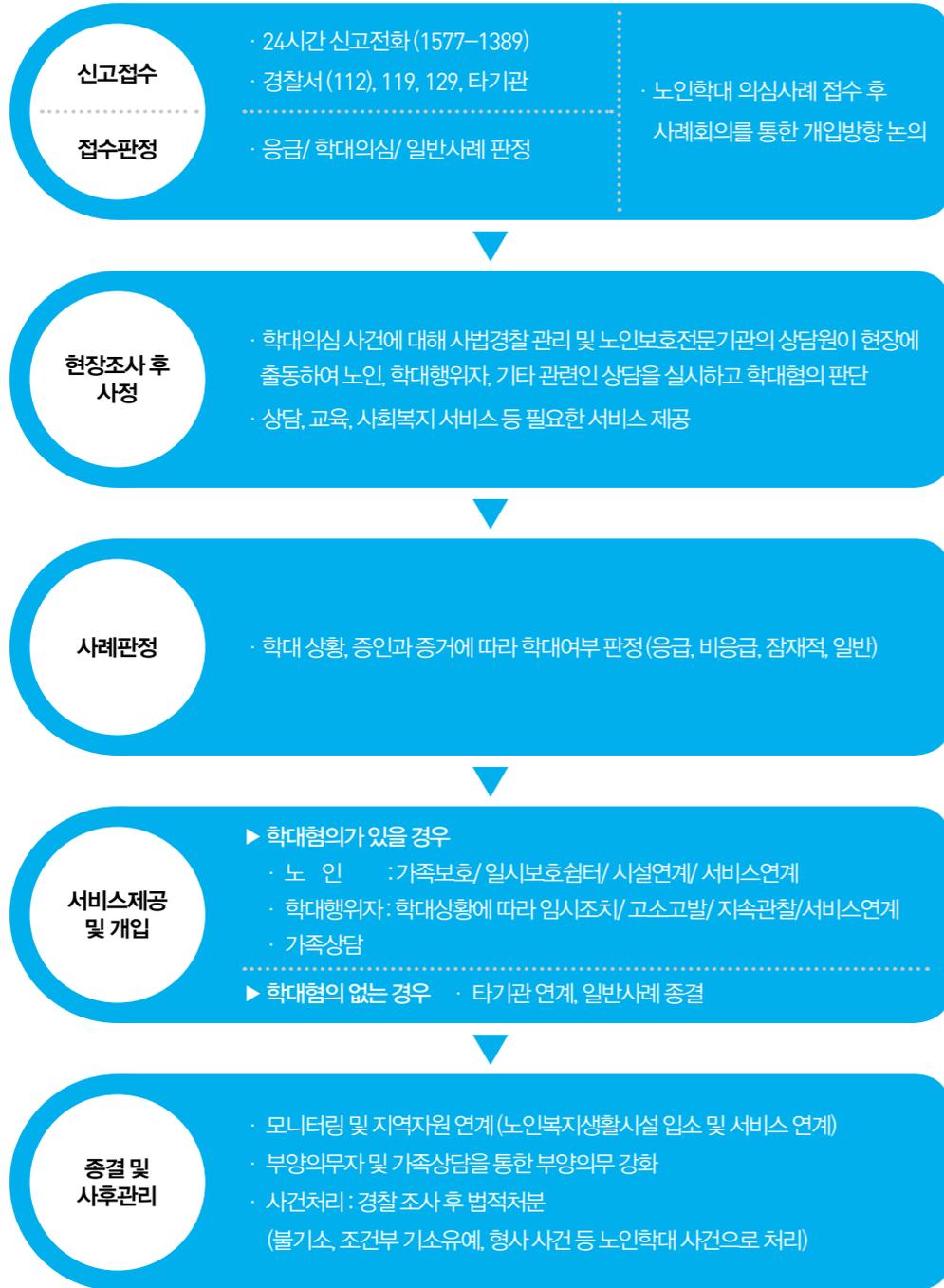
노인학대 처벌기준

유형	처벌기준
신체적 학대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노인에게 구걸을 강요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유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경제적 학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의무	·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 벌금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 벌금

✓ 노인학대 신고방법

- 1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를 통한 접수
- 2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3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 4 서신에 의한 접수
- 5 보건복지콜센터 (129)
- 6 119 신고에 의한 접수

노인학대 처리절차



노인학대 제공 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지원내용
상담	가족 내의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상담진행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연계	지자체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연계
의료기관 연계	장기요양시설 및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학대행위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기타	그 밖의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등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서비스	지원내용
보호	숙식 및 쉼터생활 지원(보호기간 3개월 외에 1개월 이내의 연장가능)
심리서비스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지원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기타	그 밖의 쉼터 보호노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노인학대 Q&A

Q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면 보복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금지(노인복지법 제57조제3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A할머니 집에서는 매일 밤마다 큰소리치는 남자 목소리와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열흘 전부터는 A할머니가 집밖에 나오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주민들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했습니다. A할머니를 만나러 간 날도 시끄러운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A할머니가 나왔고, 아무일 아니라며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A할머니가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A할머니에게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조사권에 대한 공지 후 현장조사가 가능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에 의하여 조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고지 후 A할머니를 만나고 안전상태 및 학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응급조치 의무

제39조의7(응급조치 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노인복지법 제39조」)

Q 월세방에 홀로 지내고 있는 B할아버지는 거동도 어렵고 경미한 치매증세도 있습니다. 이들과 딸들은 본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B할아버지가 지내는 집에 찾아가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도움을 주고 싶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아니고 장기요양등급도 없는 상황이라 시설입소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면 먼저 B할아버지를 위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및 부양의무에 대해 고지합니다. 만약 B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부양거부, 회피한다면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B할아버지를 부양할 수 없다면, 자녀들과 협의 후 B할아버지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로 판정하여 개입,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노인학대 상담 · 입소 조치

제28조(상담 · 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 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노인복지법 28조」)



대전지역 노인학대 관련기관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노인학대 전담경찰 (여성청소년과)	· 대전중부경찰서	중구 중앙로 112 (대흥동)	042-220-7348
	· 대전동부경찰서	대덕구 계족로 670 (법2동)	042-600-2648
	· 대전서부경찰서	서구 복수서로 47 (복수동)	042-600-3648
	· 대전대덕경찰서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11 (문평동)	042-600-4848
	· 대전둔산경찰서	서구 한밭대로 733 (둔산동)	042-600-5548
	· 대전유성경찰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지족동)	042-725-6449
노인보호 전문기관	·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둔산동)	1577-1389 042-472-1389
상담	· 대전광역시치매센터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965~9
	· 보건복지콜센터	세종시 도움4로 13	129



Chapter

05



자살 및 유가족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Hand Book

자살이란?

자살이란 자살행동으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의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살의미

- ▶ **자살생각** 자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것
- ▶ **자살계획**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 ▶ **자살시도** 죽음에 이를 목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행동을 시도 한 것
- ▶ **자 해** 자살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신체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행동을 가하는 것

자살 위기자 징후

언어적 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고 싶다는 직접적 표현 ▶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 ▶ 절망감과 죄책감 ▶ 집중력 저하 ▶ 감정의 변화
행동적 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 자해흔적 ▶ 전에 없던 행동들 ▶ 외모의 변화 ▶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상황적 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스트레스 ▶ 만성질환 ▶ 신체적 장애 ▶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자 ▶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

자살위기자 체크리스트



- 과거(최근 1년 이내)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음
-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보임
- 초조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차분해지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감정과 행동을 보임
- 주변에 칼, 끈, 농약, 다량의 수면제, 오래된 알약 등 자살도구를 가지고 있음
- 평소에 아끼거나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
-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서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게 함
- 잠을 못 자거나 잠을 자더라도 악몽을 꾸는 등 수면문제가 있고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함
- 최근에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사망한 경험이 있음
- 자신의 무가치함을 강조하고 위축됨
-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술 문제가 있음(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술 때문에 이혼)
- 암, 만성통증성질환, AIDS, 초기치매 등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망감을 호소함
- 평소에도 자주 '자살을 하겠다' 라는 말을 언급함
-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함

13개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되면 '높은 위험'이상으로 판단
 ※ 붉은 글씨 중 하나라도 체크되면 '아주 높은 위험'으로 판단(1번, 4번 질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정상태

양가감정

살고 싶은 마음 vs 죽고 싶은 마음
 →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 그중에는 죽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세요.**

홀로 버려진 느낌

→ 자살시도자 대부분,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외롭고 두려워 홀로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자살시도자에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분노, 좌절감

→ 자살시도자들은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사건과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이들에게 분노를 갖게 합니다.
 ✓ **문제를 비합리적으로 바라보거나 상담가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말과 행동을 보여도 그것에 대해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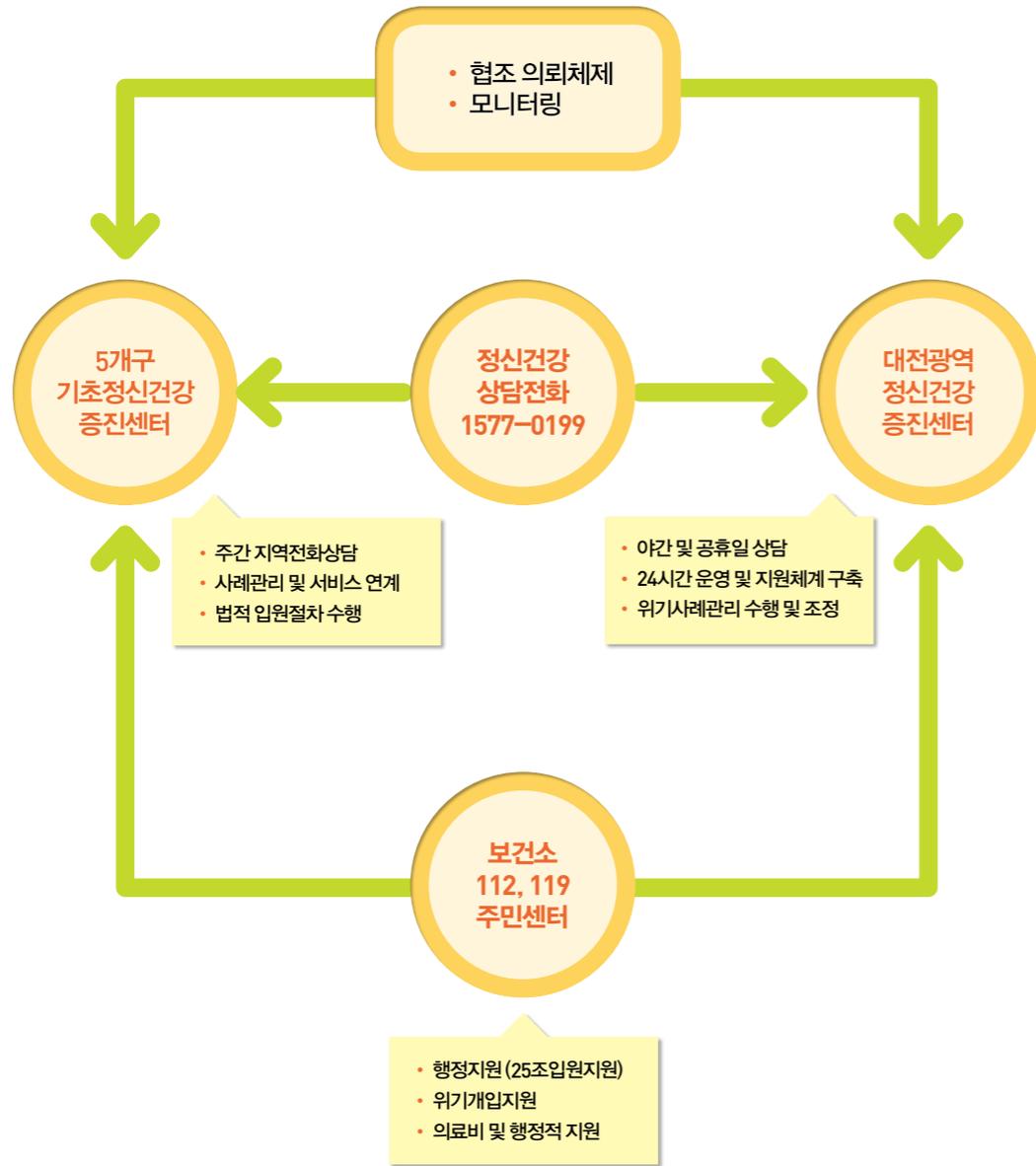
자살시도자 사정을 위한 질문

- ▶ **자살 생각 묻기: '자살'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
 - + "자살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 ▶ **죽음 혹은 삶에 대한 이유 묻기**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 **자살 계획 혹은 방법 묻기**
 - +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하거나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나요."
- ▶ **과거 자살 시도력 묻기**
 - +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 + "자살을 시도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 ▶ **정신질환 및 음주 여부 묻기**
 - + "정신질환(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등문서담, 피해망상, 지리멸렬한 반응으로 유추할 수 있음)
 - + "술을 드셨나요." (대화 중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등으로 유추할 수 있음)
- ▶ **사회적 지지체계 묻기**
 - + "지금 혼자 계시나요."

자살 위기 대응법

- ▶ **주변에 자살도구가 있다면 치워주세요.**
 - + 칼, 수면제, 끈, 술병 등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웁니다.
- ▶ **자살생각 및 계획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 +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방법, 자살 시도의 과거력, 음주 상태를 체크합니다.
- ▶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감정을 동정하지 말고 공감해주세요.**
- ▶ **결정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 ▶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 + 자살 상담에 대한 비밀 보장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 ▶ **전문기관의 연락처를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 정신건강증진센터, 1577-0199 등을 안내하고 리플릿을 제공합니다.

자살위기 개입과정 운영체계



자살시도자 단계별 개입방법

단계	위험요소	개입
응급	· 고위험+자살도구	· 출동(119,112,전문요원) 요청 · 보호자 고지 · 정신과 입원 · 위기 사례관리
고위험	· 24시간이내 시도가능성 · 치명적 자살도구 · 구체적인 자살계획 · 정신과적 문제 높음 · 낮은 지지체계 · 상담, 치료에 비협조적	· 정신과 입원 · 자살도구 제거 · 보호자 고지 · 혼자 두지 않기 · 모니터링 · 집중 사례관리
중간위험	· 낮은 위험성의 자살도구 · 막연한 자살계획 · 과거 정신과 치료경험 · 비적극적인 지지체계 · 치료에 양가적 태도	· 정신과 입원 및 외래 권유 · 자살상담 및 사례관리 권고 · 보호자 고지
저위험	· 자살 사고 · 자살계획 없음 · 지지체계 있음 · 상담에 협조적임	· 이용자원 연계 및 소개 · 정신과 외래 권유



☺ 자살유가족이란?

자살유가족이란 사랑하는 가족 및 지인을 자살로 떠나보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내용
유가족 개별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원하는 경우 상시 ▶ 방법: 내소, 방문상담(기관 및 가정방문) ▶ 상담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유가족 "상록수" 자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랑하는 가족 및 지인을 자살로 떠나보낸 20세 이상 유가족 ▶ 일시: 매월 셋째주 목요일 18시 ~ 20시(매월 1회 진행) ▶ 운영: 자조모임(언제든 참여 가능) ▶ 진행: 정신보건전문요원 ※ 상록수: 상처받은 마음을 녹(록)이고, 희망의 수를 놓다
유가족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성인(만 20세이상)유가족 ▶ 내용: 집단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방법

- ▶ 대상: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떠나 보낸 분이면 누구나
- ▶ 내용: 개별상담, 자조모임, 심리부검, 캠프, 1577-0199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치료연계 등
- ▶ 운영: 비공개 진행 및 무료 서비스
- ▶ 문의: 042)486-0005 (내선번호 1번, 자살예방위기관리팀)
- ▶ 홈페이지: <http://www.djpmhc.or.kr>

✓ 심리부검이란?

자살유가족의 면담을 바탕으로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의 고인의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

신청절차



자살 및 유가족 Q & A

Q 사례관리 대상자가 자살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살 시도 하거나,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112 또는 119에 신고하고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응급출동 요청 시 응급출동기관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① 자살 발생 장소의 정확한 주소 혹은 위치
- ② 응급출동 요청자인 서비스 제공자 혹은 자살 시도/사망자 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구분	병원명	대표번호 (응급의료센터)	의료사회복지 담당부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생명위기관리팀)	042-259-1119	042-259-1247
대전지역 응급의료센터	충남대학교병원	042-280-8129	042-280-8016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042-220-9117	042-220-9005
	건양대학교병원	042-600-9119	042-600-9037
	대전선병원	042-220-8129	042-220-8017

※ 자살 시도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응급처치 이후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관리사업」의 서비스에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관리 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관리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관리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의료진과 사례관리팀이 공동으로 자살 시도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단기(1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자살 시도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자살 시도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치료 및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자원

• 긴급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민간자원

• 대전복지재단 「위기가정지원사업」

: 공공부조의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긴급한 상황에 놓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대전복지재단: 331-8937)
- 긴급지원: 생계비, 주거지원비, 의료비
- 심리지원: 심리지원비, 위기사례 전문개입비

*기타 재단, 종교단체 등 지역 내 「의료비지원사업」을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지역 정신건강·자살 관련기관

구분	시설명	주소	연락처
응급(위기) 지원기관	· 자살 및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중구 대종로 488번길 9(은행동)	1577-0199
정신건강 증진센터	· 대전광역정신건강 증진센터	중구 대종로 488번길 9(은행동)	042-486-0005
	·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동구 현암로 22(성남동)	042-673-4619
	·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중구 수도산로 15(대흥동)	042-257-9930
	·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서구보건소)	서구 만년로 74(만년동)	042-488-9742
	· 유성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유성보건소)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장대동)	042-825-3527
	· 대덕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덕구보건소)	대덕구 석봉로 38번길 55(석봉동)	042-931-1671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구 계족로 108-1(대동)	042-286-8275
	·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구 신갈마로 209번길 25(갈마동)	042-527-9125
	·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법동)	042-635-8275
대전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 대전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서구 둔산서로 15새천년빌딩(둔산동)	042-867-0075
상담지원	· 생명의 전화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89(노은동)	1588-9191
	· 보건복지콜센터	세종시 도움4로 13	129

Chapter

06



보호관찰 및 출소자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Hand Book

🔍 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형사정책제도를 말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 유형

- 보호관찰대상자**
 형법에 의거한 선고유예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및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보호관찰 실시
-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형법에 의거한 집행유예자의 경우 500시간 이내,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처분자의 경우 200시간 이내 실시
- 수강명령대상자**
 형법에 의거한 집행유예자의 경우 200시간 이내,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처분자의 경우 100시간 이내 실시
- 전자발찌대상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폭력범, 미성년자대상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을 대상으로 하며 최장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실시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시설지원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 요원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생계비 등 지원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67호, 2015. 1. 20. 발령·시행)
주거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82호, 2015. 8. 28. 발령·시행) 제3조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지침」(법무부, 2010. 10.)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제공함.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지원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

✓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지원제도

법무보호사업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숙식제공	보호관찰대상자 및 무의탁출소자에게 숙소, 음식, 의복, 기초생활비 지원, 기본 6개월 동안 숙식제공 (3회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취업알선	지역사회 기업가 및 고용센터, 보호위원 등을 통해 취업 알선 및 근속취업 지도
창업지원	출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직종 취업경력이 있는 대상에게 지원 가능, 최대 5,000만원(최대 4년 지원, 2년 연장 가능)
긴급원호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취업교통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 지급
주거지원	국토부, LH공사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기본 2년, 최대 10년,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
가족희망복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가정을 위해 취·창업을 지원, 자녀 학습 멘토링 등 가족 단위의 통합 지원 실시
심리상담 및 치료	개인, 가족상담, 심리검사 등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맞춤형 상담 진행
사회성향상 교육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행정절차, 약물남용 교육, 원예·미술치료 등 사회 적응력 향상 교육 실시
멘토링 및 사후관리	보호수혜자들에게 직원 또는 보호위원 등이 면접, 통신 등의 방법으로 가정, 주거, 교우관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멘토링 및 사후관리 실시
합동결혼식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대상자에게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식 및 각종 신혼 후원물품 지원
직업훈련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실시(운전면허1종대형, 음식조리관련 자격증, 컴퓨터 기초과정 등), 1인 1회 50만원 한도에서 지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연계시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출소후 공단에서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 또는 공단을 통해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소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취업설계), 2단계(직업능력개발), 3단계(취업성공)에 이르는 취업지원과 함께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갱생보호 프로그램



구분	내용
성인알코올 상습자 상담프로그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프로그램	▶ 풋살교실 프로그램(풋살무료강습 및 풋살경기 등)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명상 및 108배 체험 등) ▶ 레프팅 프로그램(레프팅 및 수상레크레이션 등) ▶ 산행체험 프로그램(산 등반 및 문화유적 탐방 등) ▶ 숲체험 프로그램(숲체조 및 숲명상 등) ▶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인생책만들기, 나의 꿈 설계 등) ▶ 역할극 치유 프로그램(학교폭력 역할극)



보호관찰 및 출소자 Q & A

Q 출소자가 법무보호사업의 각종 갱생보호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갱생보호 신청자는 직접 거주지 관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부(대전·충남지역 거주자의 경우 대전충남지부)에 방문하여 갱생보호를 신청해야하며, 출소증명원 또는 형사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부에 전화상담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 042-581-0706)

✓ 갱생보호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범방지에 필요한 숙식제공, 취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가족관계회복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Q 출소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위협을 가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A 위협과 협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예방기관에 연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보호관찰대상자(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 가석방·가출소·가중료 보호관찰대상자, 전자발찌 및 성충동약물치료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로, 그 외 대상자(만기출소자, 보호관찰이 종료된 대상자)는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Q 사례관리 대상자가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출소에 관하여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나요?

A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 ① 형집행상황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이송, 사망 및 도주 등
- ②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해제일 등

대전지역 보호관찰 및 출소자 관련기관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보호관찰	· 대전보호관찰소	중구 보문로 282 (대흥동)	042-280-1271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중구 보문로 282 (대흥동)	042-280-1361
	· 천안보호관찰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성정동)	042-590-1530
	· 홍성보호관찰지소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72번길 30-14, 모두빌딩 3층 (대교리)	042-632-6862
	· 서산보호관찰지소	서산시 서령로 89, 일원프라자 2~3층 (동문동)	042-668-5880
	· 논산보호관찰지소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27, 중앙타운 2층 (취암동)	042-734-8905
	· 공주보호관찰지소	공주시 번영1로 114, 공주클리닉 6층 (신관동)	042-854-1201
갱생보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 (사정동)	042-581-0706
피해자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지방검찰청)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042-472-0082
	· 대전스마일센터	서구 갈마로 139 (갈마동)	042-526-1295



고 위 험 군 사례관리 핸드북

- | | |
|--------|-------------------------------|
| 발행인 | · 이상용 |
| 발행처 | · 대전복지재단 |
| 주 소 |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F |
| 전 화 | · 042.331.8927~9 |
| 팩 스 | · 042.331.8924 |
| 발행일 | · 2015. 12 |
| 디자인·제작 | · 디자인스튜디오 203 대전 042.224.2030 |